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지연 과태료 미부과

기 관 명 충청남도

내 용

「수산업법」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·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,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않으면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, 3차 이상의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, 근해어업의 휴업신고, 근해어업의 제한·정지, 근해어업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·입항의 제한 및 근해어업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근해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에서는 근해어업을 받은 어선의 매매, 임대차, 증여, 상속 등에 따라 아래 [표]와 같이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를 수리하였다.

[표] 근해어업허가 및 지위승계 현황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. 10월말
허가 건수	331	315	302
지위승계 건수	59	40	35

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 등이 신고 만료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시에는 1차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○○○로부터 근해안강망 어선 ○○○호(24톤)를 '15. 11. 24. 구입한 ○○○이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기간 만료일인 '15. 12. 23.에 188일이 지난 '16. 6. 27.에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리하였다.

또한 근해통발 어선 ○○호(32톤)의 소유자인 ○○○으로부터 '16. 3. 31. 지분 10% 증여받은 ○○○가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기간 만료일인 '16. 4. 30.에 4일이 지난 '16. 5. 4.에 신고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시정]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분을 부과·징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